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9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3일

발 의 자 : 권영희, 채인득, 유 용,
김상훈, 이현찬, 이광호,
경만선, 이준형, 이호대,
이세열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운영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포함하며,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창업지원 사업과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의 자문단 구성·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학을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상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 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각종학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운영 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 다. 창업지원 사업과 기술매칭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4조)
- 라.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의 부회장 선출 방식을 회칙에 위임하고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학”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한다)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란 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대학제안사업

- 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대학, 자치구와 함께 조성·운영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제3장의 제명 “대학제안사업”을 “캠퍼스타운 조성·관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학제안사업 공모에 선정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을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으로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4장과 제13조부터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창업지원 사업

제13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조성, 창업 자금 지원, 창업박람회 개최, 전문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 활성화와 홍보·마케팅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성과자에게 시상금, 창업공간 이용 자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우수 성과자의 포상과 우대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기술매칭사업)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예비 창업 기업을 포함한다)과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캠퍼스타운 참여 대학의 교원·연구원 등과 연계한 적정기술 컨설팅, 기술연구개발 등 기술매칭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술매칭사업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행·위탁) 시장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회장을 둔다. 부회장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하고,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정책협의회회의 운영과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각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교수들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담당교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대학”이란 「<u>고등교육법</u>」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학(제5호에서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중 <u>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대학을 말한다.</u></p> <p>2. “<u>캠퍼스타운 조성 사업</u>”이란 <u>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대학”이란 <u>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u></p> <p>2. “<u>캠퍼스타운 조성 사업</u>”이란 <u>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u></p> <p style="margin-left: 2em;">가. <u>대학제안사업</u></p> <p style="margin-left: 2em;">나. 「<u>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12조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u>대학과 자치구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캠퍼스타운 사업</u></p>
제3장 <u>대학제안사업</u>	제3장 <u>캠퍼스타운 조성·관리</u>
<p>제9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u>대학제안사업 공모에 선정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9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u>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4장 창업지원 사업</p>
<p><신설></p>	<p>제13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조성, 창업 자금 지원, 창업박람회 개최, 전문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창업 활성화와 홍보·마케팅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성과자에게 시상금, 창업공간 이용 자격 등을 제공할 수 있다.</p> <p>③ 우수 성과자의 포상과 우대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신설></p>	<p>제14조(기술매칭사업) ① 시장은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예비 창업기업을 포함한다)과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캠퍼스타운 참여 대학의 교원·연구원 등과 연계한 적정기술 컨설팅, 기술연구개발 등 기술매칭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기술매칭사업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신설></p>	<p>제15조(대행·위탁) 시장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제4장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제5장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p><u>제13조</u>(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구성)</p> <p>①~③ (생략)</p> <p><u>④ 부회장은 정책협의회 위원인 대학총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u></p>	<p><u>제16조</u>(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구성)</p> <p>①~③ (현행과 같음)</p> <p><u>④ 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회장을 둔다. 부회장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회칙으로 정한다.</u></p>
<p><u>제14조</u>(정책협의회 기능) (생략)</p>	<p><u>제17조</u>(정책협의회 기능) (현행과 같음)</p>
<p><u>제15조</u>(정책협의회 운영 등)</p> <p>①~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④ (생략)</p>	<p><u>제18조</u>(정책협의회 운영 등)</p> <p>①~③ (현행과 같음)</p> <p><u>④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각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교수들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담당교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⑤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비용 발생
 - ※ 제13조(창업지원) 및 제14조(기술매칭사업), 제18조제4항(정책협의회 운영 등)의 경우에도 비용은 있으나 관련 예산이 아래와 같이 편성되어 있음

〈 비용 조항 및 2020년 관련 예산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조항	관련 예산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예산액
제13조 (창업지원)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	창업공간 조성	9,000,000
	캠퍼스타운 박람회 및 컨퍼런스 개최	캠퍼스타운 사업 박람회	104,290
	광운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창업경진대회 개최	50,000
	중앙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지역 및 공동 창업경진대회	120,000
제14조 (기술매칭사업)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대학기술매칭센터 운영	45,000
		기술매칭센터 운영 인력	30,000
제18조제4항 (정책협의회 운영 등)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운영	캠퍼스타운 전문가협의회 등 운영	39,798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대학의 범위를 종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비대학 제외)에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각종학교까지 확대함에 따라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한국예술종합대학’ 1개교로서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선정 여부가 불확실하여 비용발생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